

2021학년도 2학기 대구대학교 평생교육원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실습 과목 신청자 안내사항

※ 아래 사항에 대하여 참고하신 후, 신중하게 수강여부를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1. 모집인원: 각 반별 선착순 30명

2. 지원 자격: 1영역과 3영역에서 8과목(24학점) 이수 완료한 학습자

구분	과목명
1영역 (한국어학) 예시과목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개론, 한국어문법론, 한국어어문규범, 한국어음운론, 한국어의미론, 한국어어휘론, 한국어사 등
3영역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예시과목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개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문법교육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표현교육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이해교육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재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능력평가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발음교육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어휘교육론, 외국어로서의 언어교수이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과정 및 교수요목설계,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교육론 등

3. 수업 일정표

- 참관수업은 4주간 20시간: 온라인(비대면) 참관수업

강좌명	모집인원 (정원)	시간	교육기간 / 일자	수업 방법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실습 1	30	토 09:00-13:30	9/4~12/18	전체 비대면 (실시간 원격) ※교육부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운영 권고사항」 변경 시, 수업방법은 변경될 수 있음.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실습 2	30	토 14:00-18:30	9/4~12/18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실습 3	30	화 09:00-13:30	9/7~12/21	

4. 제출 서류

가. 입학원서 1부(증명사진 부착): 첨부파일 다운로드(※희망반 미체크 시, 무작위로 배정함)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본인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기재) 1부

라. 최종학력 졸업증명서(학사 이상 학위소지자는 학사 졸업증명서) 1부

※ 대학 중퇴자는 재적증명서 원본 1부 제출

※ 검정고시 졸업자는 검정고시 합격증 원본 1부 제출

마. 선수과목 이수 성적증명서 또는 수강확인서(이수증명서) 1부

※ 증명서는 기관직인 날인 확인 후에 제출

※ 수강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8월 31일까지 선수과목 모두 완료되어야 하며, 실습과목 개강 후 성적증명서로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시, 선수과목 중 F 과목이 있을 경우는 실습수업 수강이 취소될 수 있음)

※ 모든 증명서류 제출은 3개월 이내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누락된 서류가 있는 경우는 탈락 처리 하오니 제출 전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5. 학습비 납부 및 등록기간 안내

- 입학원서 제출 → 수강등록 안내(합격자에 한함) → 학습비 입금 → 신청과목 수강
- 등록기간: 2021. 8. 30.(월) 17:00까지 입금 완료

- 학습비: 420,000원(참관수업료 60,000원 포함)
- 등록계좌: 207-04-000318-9 대구은행 / 예금주: 대구대학교
 ※ 학습비 납부 시, 반드시 학습자 본인명으로 송금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 접수자는 접수등록 완료 후, 개별문자 안내에 따라 학습비를 송금하시기 바랍니다.

6. 오리엔테이션 자료 및 기타 문서 서식과 관련하여 대구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대구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주소: <http://lifelong.daegu.ac.kr>
- 대구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 학점은행제 → 서식자료실 참조

7. 실습과목만 수강하시는 학습자분들께서는 학점인정 신청 및 자격증 신청 업무를 따로 도와드리지 않으니 개별적으로 기간 및 방법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8. 15주간 75시간 수업으로 출석률 80% 미만 시, 자동 탈락 됩니다.

※ 75시간 수업에는 참관수업 시간도 포함되며, 참관수업은 20시간 이수 완료하여야 합니다.

9. 입학 원서에 교육비 면제자(국가유공자 등) 체크란이 있습니다. 교육비 면제 대상자는 체크를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유공자 증빙서류 반드시 제출)

10. 학습비(수업료) 환불은 개강 전 100% 환불 가능하며 개강 후에는 평가인증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별표]에 의거하여 환불 됩니다.

[별표] 학습비 반환 기준(제4조제2항 관련)

반환 사유	반환 사유 발생 시점	반환 금액
제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오납된 금액 전액
제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